

□15□ 무상취득 시 감정평가금액으로 취득 신고 시 신고서 반려 여부

(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파-2641, 2016.10.17.)

【쟁점】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시 감정평가금액을 취득가격으로 신고하였을 경우 해당 취득세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

【회신】 취득세는 남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므로 신고행위 자체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라도 신고서를 반려할 수 없음

※ 신고납세절차의 편의를 위하여 원래 납세자가 작성하여야 할 취득세의 취득신고 및 납부세액계산서나 납부서에 조세공무원이 납세자의 동의를 전제로 세액 등을 대신 기재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불과함(대법원 1999.6.11. 선고 98두16163 판결)